재 산 목 록

명칭	금액 또는 시가(단위:원)	압류등 유무		Ы	고		
현금	555,555,555원	무	L02L02				
			금융기관명	기업은행			
예금	25,000원	무	계좌번호	별지참조			
			잔고	25,000원			
보험	5,099,999원	무	보험회사명	테스트보험사			
			증권번호	1234			
			해약반환금	5,099,999원			
			보험회사명	보험사2			
보험	1,000,000원	유	증권번호	1234			
			해약반환금	1,000,000원			
			차종/연식: 소나타				
자동차(오토바이	4 000 00081		채권(최고)액: 4,000,000원 담보권종류: ㅇㅇㅇ				
포함)	4,900,000원	무	환가예상액: 5,000,000원 채무잔액: 100,000원				
			しつ己				
	4,000,000원	Oπ	임차물건	임차보증금			
임차보증금			보증금 및월세	보증금 4,000,000)원	월세 300,000원	
(반환받을보증금			차이 나는사유	차이나는이유			
1,000,000원)			압류할수 없는 보증금 50,000,000원				
			00	•			
		무	소재지	테스트			
			면적	100 m²			
			부동산의종류	토지(), 건물(), 토지+건물(), 집합건물()		()	
부동산(환가예상액에 서피담보채권을 뺀금액을 금액란에적는다)	50,000,000원		권리의 종류	소유권			
			환가예상액	50,000,000원			
			담보권 설정된경우 그 종류및 담보액	근저당권			
사업용 설비.재고품. 비품 등	1,000,000원	무	품목,개수	테스트		100	
			구입시기	????			
			평가액	1,000,000원			
대여금 채권	1,000,000원	무	상대방 채무자:	0000		□ 진술서 별첨	
매출금 채권	1,000,000원	무	상대방 채무자:	매출금채권		□ 진술서 별첨	

예상 퇴직금	9,500,000원	무	19,000,000원 (압류할 수 없는퇴직금9,500,000원 제외)		
(가)압류 적립금	4,000,000원		내용: (가)압류적립금		
공탁금	4,000,000원		내용: 공탁금공탁금		
기타()	4,000,000원	무	기타기타기타		
합계	645,080,554원				
면재재산 결정신청 금액	50,000,000원		1. 주거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		
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	1,231,231원		2.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		
청산가치	593,824,323원		*예금(청산가치) : 0원 =[예치금액 합계: 25,000 - 공제금액: 1,850,000] *보험(청산가치): 6,099,999원 =[{보장성: 0 - 공제금액: 1,500,000} + 6,099,999]		

면제재산 결정신청서

사		건 2025 개회 123호 개인회생
신 경	형 인	(채 무 자) 테스트
		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,제1항 제1호,제383조 제2항에 따리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. (※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〉표를 하고,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)
		■ 1.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
		(법 제580조 제3항, 제1항 제1호, 제383조 제2항 제1호)
		 ※ 첨부서류 가. 별지 면제재산목록 (채권자수 + 3부) 나. 소명자료 : □ 임대차계약서 1부 □ 주민등록등본 1통 □ 기타 [] 통
		■ 2.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
		(법 제580조 제3항, 제1항 제1호, 제383조 제2항 제2호)
		※ 첨부서류 가. 별지 면제재산목록 (채권자수 + 3부) 나. 소명자료 : □[] 1통 □ 기타[] 통
		20

테스트

신 청 인(채 무 자)

서울회생법원 귀중

(인)

목 록

면제재산 금액	금 50,000,000 원
	①임대차계약일자 (2025.04.03)
	②임대차기간 (2025.04.01 부터 2025.04.03 까지)
	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(ㅁㄴㅇㅁㄴㅇㅁㄴㅇㅁㄴㅇ)
주택임대차계약의	④임차보증금 (444,444 원)
내용	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(월 4,444 원,3 개월간 연체)
	⑥임대인의 성명 (ㄴㅇㄹㅇㄴㄹㄴㅇㄹ)
	⑦주민등록일자 (2025-04-05)
	⑧확정일자 (2025.04.04 확정일자받음)

■ 임대차계약서 1부/ □ 주민등록등본 1통/ □ 기타 [통

□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(법 제383조제2항 제2호)

순번	특정재산의내용	소재지	추정시가	면제재산결정의 사유
	0000			

※ 소명자료: □ ()보증서 1통/ □ 사진 1장/ □ 기타 [통